



행복한 교육
행복한 아이
행복한 미래

교육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05 사례로 알아 보는 청렴 Q&A



- Q**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왔을 경우, 무조건 자유수강권을 지원 해야 하나요?
- 안됩니다.** 학교에 학교장 추천지원 인원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 가능하나, 여유인원이 없다면 학교예산을 활용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Q** 보조인력 선발 시 타사업과 중복되어 근무하는 자를 선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을 담당하면서 타사업(스쿨버스 안전도우미 등)과 중복되어 계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돌봄강사, 프로그램 강사 등)를 보조인력으로 계약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 Q** 방과후학교 강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은 금품(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며 3만원 미만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 돌봄전담인력에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①항)
- Q** 방과후학교 강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결강하거나 학생 지도에 소홀한 경우 바로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2회이상 무단 결강하거나 학생 지도에 소홀한 경우 절차해지에 해당하며, 해지 15일 전에 해지사유서를 통지해야합니다. 단,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Q&A

- Q** 수강생의 중도포기로 강사료가 부족할 때 수용비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대비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에서 강사료를 보전할 수 있으나 수용비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Q** 방과후학교 강사나 업체가 학교와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강사나 업자는 부정당업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Q**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강사로 일 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는 모집 공고 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단, 강사가 없을 때는 재공고 시 이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친인척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인을 강사선정위원회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 Q**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등을 강사에게 지참하도록 요구 또는 기부 받아도 되나요?
- 안됩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Q** 다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강사의 경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치를 안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성범죄 관련 및 아동학대 전력 조처 동의서는 학교마다 조처 해야하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01

행복한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방과후학교의 비전 및 목적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방과후학교 이렇게 운영해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 중심 자율 운영
-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강제참여 금지)
-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연 1회)
-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프로그램 개설
- 교육활동 결과 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우수한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 선발 (단위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 위탁 강사 및 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방과후학교 모두가 행복해요

02

부모가 안심하는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이란?

별도의(전용 또는 겸용교실)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유형	운영시간	프로그램	대상
오후돌봄	방과후~17:00	숙제지도, 특기지도, 방과후학교 참여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
저녁돌봄	17:00~22:00	자율활동, 귀가지도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방과후~17:00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교육기부, 자원봉사) 활용	돌봄이 꼭 필요한 3~6학년 학생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
방학중돌봄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오후돌봄 및 저녁돌봄 운영시간은 학교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안심하는 학부모, 성장하는 어린이

- 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놀이시간 확보와 안전 교육 강화
- 질 높고 평안한 돌봄교실 운영
-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지역돌봄서비스 운영
- 저녁돌봄 시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 급·간식 안전관리 강화



03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 이렇게 활용해요

-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학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 부모 공인인증서 보유)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1순위 대상자	2순위 대상자	3순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 및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150%) 범위에 속하는 자	학교장추천 (다자녀, 다문화포함), 1,2순위의 10% 범위내에서

※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04

방과후 마을학교

마을에도 방과후학교가 있어요

- 학교 밖 지역사회(마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무료(도서 및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각 지역에서 80여개의 마을학교 운영
- 대상 : 초·중학생 중 희망 자(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